

## 명예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본교라 함) 명예학사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 및 자격)** 명예학위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와 본 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
2.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,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

**제3조(학위종별)** 명예학사 학위의 종별은 명예학사 학위 수여 대상자의 입학 당시 전공학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입학자가 아닌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**제4조(수여절차)** 명예학사 학위의 수여는 교학지원처장이 명예학사 학위 수여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
**제5조(학위수여 시기)** 학위증서의 수여시기는 매년 2월과 8월, 연 2회로 한다.

**제6조(학위수여의 취소)** 명예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7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1. 10. 8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
# 학 위 증

성 명 : .  
생년월일 : 년 월 일생  
학과(전공) : ○○○○ 학과(전공)  
○○○○ 명예학사

위 사람은 \_\_\_\_\_

\_\_\_\_\_이기에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 
의결을 거쳐 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○ ○ ○

학위번호 : 예원예술대 ○○○○ - 학 - ○○○○